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차대규칙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용어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동일한 조의 가지번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내규가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융자금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제한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제28조의2)

- 1)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 및 제14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신청제한 근거 마련
- 2)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자 및 제27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급신청제한 근거 마련
- 3)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완료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제한 근거 마련

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안 제28조)

- 1)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비율(30~100%) 근거 마련(산안법 제15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환수)

다. 지원설비의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외 대상 확대(안 제41조)

- 1) 지원설비의 소모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은 사후관리기간 적용을 제외토록 근거 마련

라. 용자금·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근거 마련(안 제46조)

- 1)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용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공급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요청 및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지급)대상자 및 지원(지급)결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4조, 제27조)

- 1)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용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 및 거짓·부정으로 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
- 2)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자 및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

바.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사업 보조금 지급절차 현행화(안 제31조)

- 1) 확정금액 통보, 지급요청 안내 등 건설업 보조금 지급 절차 현행화
- 2)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변경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신규 반영

사. 기존의 가지번호 대신 별도의 조항번호를 부여하여 조항 정리

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용어 수정 내용 반영

3. 개정(안)

가. 전부개정규정(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나. 별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명개정 2021.07.01]

제정 2008.08.18. (공단규칙 제487호)

전부개정 2021.07.01. (공단규칙 제9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란 융자보조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과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7조, 제28조의4 제1항 각 호 및 제28조의8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으로서 별표 1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말한다.
2.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판단금액”이란 융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취득하려는 대상품목(또는 모델)의 견적금액, 자금신청금액, 실거래금액, 수입금액,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가능금액”이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또는 모델)별 “판단금액”에 사업장 융자금 지원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5. “지급가능금액”이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또는 모델)별 “판단금액”에 보조금 지급 비율,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최대지급금액, 사업장 보조금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조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6. “공급업체”란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용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7. “공사금액”이란 공단 전산망(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개별 사업장 정보)에 등록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종별 분리 발주의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계약금액 총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 금액을 말한다.
8. “시스템비계”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9. “사후관리기간”이란 지원설비의 내용연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투자 완료 확인일로부터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설비별 의무 유지·관리·사용기간을 말한다.
10. “산업단지 관리주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이하 “용자보조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종 및 상시 근로자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따른다.

② 용자보조규정 제5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 다. 전년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매월 말일 기준)
2. 해당 신청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 가. 성립일 이후 임금대장 사본
 - 나. 당해 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 다. 성립일 이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매월 말일 기준)

제2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제4조(융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①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융자금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1. 융자보조규정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또는 그 밖에 대출거래 약정(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투자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서류에 기술적 미비사항이나 자격미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제5조(투자계획 확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을 통해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 확인표”에 따라 확인(이하 “투자계획 확인”이라 한다)하고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에 대한 투자계획 확인은 융자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사업장의 시설개선 설비 등에 대한 투자계획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광역본부장등이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을 확인 할 경우에는 융자보조규

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신규 도입 여부, 신청설비의 각 부분별 형식, 설치위치, 규격, 성능, 용량, 재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 확인 결과 용자금 지원 신청 내용이 용자보조규정의 용자금 지원목적,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품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용자금 지원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용자금 지원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이하 이항에서 “용자금 이행확인 서약서” 라 한다)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용자금 지원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자필 서명 등을 한 용자금 이행확인 서약서를 광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용자금 이행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① 광역본부장등은 용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하 “용자금 지원심사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본부장등으로 하고 위원장은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는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이하 “광역본부등” 이라 한다)의 용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광역본부등의 부서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선정한 자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관련자

- 나.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마.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보건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바. 안전·보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 아.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용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광역본부장등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

⑤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3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용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①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용자보조규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방호장치, 보호구 등 단순지원품 또는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1. 용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2. 용자보조규정 제15조에 따른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용자금 상환주체의 변경 승인
4. 그 밖에 광역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용자금 지원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지원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열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열람과 열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2회 연속 서면심사는 지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 목적과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전일까지 각 용자금 지원심사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용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용자금 지원신청자 또는 기술제공 관련 공급업체 등의 관계자를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또는 열람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또는 열람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 내용 및 회의록 공개 여부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⑥ 위원장은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거나 공개함으로써 민원발생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용자금 지원심사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자금 지원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제척, 기피, 회피) ①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직접 투자계획 확인 업무를 수행한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사자료 상정) 광역본부장등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투자계획 확인표 등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작성한 융자금 지원 심사자료를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지원 심사 등) ①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 여부
2.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3. 융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 여부
4.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광역본부장등이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 확인표”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현재의 사업장과 설치장소의 작업 실태 및 문제점
2. 재해예방시설 투자로 인한 기대효과
3.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성능 및 적정용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융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제조원가,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실거래금액, 견적금액(상세 산출내역을 포함한다), 수입면장 등을 참고하여 지역 및 현실여건에 따라 판단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주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융자금 지원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사양 및 형식별 융자금 지원한도액 현황을 검토, 조정하여 제1항제3호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공사용가계산 표준서
2. 기 융자금 지원결정 현황 등
3. 2인 이상의 견적서(주요 부품 단가 등 상세 산출내역이 포함된 경우에만 함)

⑥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⑦ 우선순위는 해당 연도 융자금 재원(또는 월·분기별 분할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다음 각 호를 고려한 해당 연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융자금 재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 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3. 고용증가 사업장
 4. 장애인, 장년, 청년,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5.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6. 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7. 융자금 지원신청 접수 순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융자금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금 지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 ⑨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심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9조제7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장이 동일 회차의 기한을 경과하여 보완을 완료할 경우에는 차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상정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융자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서를 발급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

보하고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차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융자금 지원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부터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된 투자계획서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융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양산품에 한함)의 모델, 수량 등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대출기한(융자금을 우선 지원받은 사업장은 투자완료기한), 융자취급은행(지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광역본부장등에게 지체 없이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융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융자보조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의 확인을 받고자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이하 “융자금 지원 확인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현장방문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설비투자완료 확인표에 기재된 내용

을 확인(이하 “투자완료 확인”이라 한다)한 후 용자보조규정 별지 제4호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용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대상설비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공사품인 경우에는 제2항의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용자금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용자금 지원금액은 조정 전의 용자금 지원 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자금 지원대상자의 시설개선 설비 등에 대한 투자완료 확인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장 방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 결과 투자완료된 시설이 투자계획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4조(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및 용자금 지원결정의 취소(이하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15조에 따라 용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용자금 지원결정 취소를 하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원받고자 한 경우
3. 용자보조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용자보조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용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6.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7.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용자보조규정 제38조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못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취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용자금을 미리 지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에게 취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은 지원한 용자금을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시설용자자금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도·양수를 승인하고 용자금 지원 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용자금 지원신청의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용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 또는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용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규칙 제2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용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의 용자금 지원신청 제한기간 종료 전 용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해야 한다.

제3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제1절 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사업

제15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 기준)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보조금은 대상품목의 견적금액, 자금신청금

액, 실거래금액, 수입금액,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용자보조규정 제18조의 클린사업 신청 사업장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및 용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험업종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70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에 따른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8조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 비율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용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원 이후 고용증가된 인원 1명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단일품목 단위로 공단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급가능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재원의 100분의 40까지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용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지원빈도, 지원금액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대상품목별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 정액지원, 보조금 지급비율 등의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제한) ① 용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가 클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원의 인정은 직전 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유효기간 내로 제한한다.

② 재인정 및 10년 경과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내용을 따른다.

제15조의3(투자 컨설팅) ① 광역본부장등은 용자보조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클린사업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점검, 감독 또는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등의 기술지원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 컨설팅 시 보조금 지급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이하 “보조금 이행확인 서약서”라 한다)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융자보조규정 제9조”를 “융자보조규정 제21조”로 본다. 단, 별지 제8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조금 이행확인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자필 서명 등을 한 보조금 이행확인 서약서를 광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보조금 이행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투자계획 확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과 제15조의3 투자 컨설팅 내용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 확인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이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확인을 할 경우에는 융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조금 지급신청 설비의 각 부분별 형식, 규격, 성능, 용량, 재질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 확인 결과 보조금 지급신청 내용이 융자보조규정의 보조금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품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용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를 “용자보조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로 본다.

제19조(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①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자금” 을 “보조금” 으로, “지원” 을 “지급” 으로, “용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 을 “용자보조규정 제22조제1항” 으로, “용자보조규정 제15조” 를 “용자보조규정 제25조” 로, “제40조제4항에 따른 용자금 상환주체의 변경 승인” 을 “제40조제5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승인”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는 용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용자보조규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분할납부 승인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등을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척, 기피, 회피)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제척 등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자금” 을 “보조금” 으로, “지원” 을 “지급” 으로, “제5조에 따른 직접 투자계획 확인한 사항” 을 “제15조의3, 제17조에 따른 직접 투자 컨설팅 및 투자계획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로 본다.

제20조(심사자료 상정) 광역본부장등은 제19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17조에 의한 투자계획서 확인표 등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작성한 보조금 지급 심사자료를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급 심사 등) ① 보조금 지급 심사 등에 관하여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자금” 을 “보조금” 으로, “지원” 을 “지급” 으로, “제7조제1항제1호” 를 “제19조” 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재원(또는 월·분기별 분할재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한 해당 연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재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3. 고용증가 사업장
4. 장애인, 장년, 청년,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5. 재해다발 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6.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위험공정 보유사업장
7. 이사가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8. 최초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사업장
9.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순
10.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용자보조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검토를 공단본부(이하 “본부”로 한다)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 심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급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21조제2항”으로,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9조제7항”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검토를 본부로 요청한 경우, 가격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기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를 발급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차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3항”을 “융자보조규정 제22조제3항”으로 본다.

제25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융자보조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의 확인을 받고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이하 “보조금 지급 확인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설비투자완료 확인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이하 “투자완료 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 결과, 투자완료된 설비가 투자계획서와 부합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 결과, 투자완료된 설비가 투자계획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 확인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지급)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5조의 투자완료 확인 결과, 투자계획서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융자보조규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출한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

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은행계좌 또는 대표자(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지 여부
2.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이하 “설비설치자등”이라 한다)간에 계약한 설비 또는 공사대금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보조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제출받아 설비설치자등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공사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조금 지급금액은 조정 전의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최종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미리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용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이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를 하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용자보조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5.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6. 용자보조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른 설비 또는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용자보조규정 제38조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못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취소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보조금 반환 고지,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고정시설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2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용자보조규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단,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후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관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용자보조규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 연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입은 경우
3.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한 경우
4.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5.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6.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용자보조규정 제25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15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법 제15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용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 중 법 제1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인 경우로서 반환통보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2. 취소 사유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환통보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승인된 경우로서 고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이사장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해당 기간 내에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한을 처분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부과 사유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며,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제28조의2(보조금 지급신청의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자 또는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규칙 제2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중인 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환수 및 반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제한기간의 종료 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해야 한다.

제2절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사업

제29조(건설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 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에 따라 같은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급대상 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하되,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의 경우 지급대상 현장 2개소를 1개소로 산정한다.

② 용자보조규정 제26조에 따른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되, 용자보조규정 제28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보조금 지급대상 현장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65까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보조금 지급대상 현장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60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공사 중 공사비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설비가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인 경우 공사금액별 시스템비계 임

대기간 및 단위면적 당 표준단가,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에 대한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설비 및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설비의 설치면적, 임대기간, 수량 감소 등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확인 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확인의견란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명기하고 투자완료 설비 검토내역에 작성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광역본부장등에게 지체 없이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지급설비 설치 및 해체 확인) ①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시스템비계 설치, 안전방망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확인의견란에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해체 확인을 받기 위해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비계에 대한 해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안전방망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구입이 투자계획서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투자완료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의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 비계 설치, 안전방망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구입·사용이 투자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조금 지급결정 금액을 감액해야 하며,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2조(보조금의 정산) ① 지급대상의 폐업·파산, 연락두절(사업주 잠적) 등의 사유로 해당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시점에서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 안전방망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구입·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한 후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폐업·파산, 연락두절(사업주 잠적)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한 보조금을 공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①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결정통보,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반환,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제한 등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2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용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을 “용자보조규정 제27조”로,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투자계획 확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투자계획 확인은 제출한 투자계획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투자계획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공정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현장의 공사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3절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제34조(산업단지의 보조금 지급 기준) 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견적금액,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조달가격(조달수수료 포함),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온라인을 통해 조사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4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 경우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③ 설치공간이 자가소유 또는 임차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임대비용 등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자가소유의 설치공간을 제공한 경우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장소의 목적에 맞게 변경되는 공사(철거, 구조, 전기, 소방, 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4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대상품목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안전보건도서 등 관련자료, 자료게시대, 책장, 상담용 책상, 의자, 컴퓨터
2. 안전보건교육시설: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책상, 의자, DVD·CD 등 교육교재, 교육용 컴퓨터, 체험교육설비, VR 등 가상체험 설비
3.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헬스장, 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수영장 시설, 에어로빅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공동사용 목욕(샤워)시설, 세탁시설
5.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품목: 혈압계 등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의식고취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품목으로서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품목

제36조(보조금의 선지급) ①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가능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보조금 지급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투자완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선지급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하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준용) ①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결정통보, 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제한 등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2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을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4” 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결과를 투자완료 확인시 제출받아 정산하되, 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제38조(고위험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 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의 제5호 및 제6호의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는 재해발생동향, 산재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보조금은 대상 품목의 견적금액, 자금신청금액, 실거래금액, 수입금액,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7의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70까지로 하며 용자보조규정 제

28조의9에 따른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고의 경우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망 사고 예방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판단금액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 제1호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장치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방호조치 및 안전설비는 설비별 소요금액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①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결정통보, 투자계획의 변경 승인,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제한 등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2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을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해당연도 채용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하되, 채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재해발생 현황 및 산재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일까지 투자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계획 확인을 제출한 투자계획서, 기술지도 보고서 등의 첨부서류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0조(사후 기술지도) ① 광역본부장등은 용자보조규정 제38조에 따라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은 지원설비의 가동상태 확인 및 재해예방 기술 지원을 위한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용자금 지원금액 또는 보조금 지급금액, 지원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구분을 두어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용자금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2.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이 전부 취소된 경우
3.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고장 등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공구대, 보호구 등 소모품인 경우(건설용 가설기자재 포함)
7. 이사장이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설비별 지원기준」에서 따로 정한 품목
8.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9.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해제가 된 경우
10.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및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에 따른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잣은 이동 등의 사유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설 및 장비
11. 그 밖에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또는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 기술지도 점검표”에 따라 제1항의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보완통보 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용자보조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설비를 유지, 관리 및 사용하고, 상환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용자금 상환주체,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원설비를 유지, 관리 및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양수,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광역본부장등은 변경승인 요청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취소, 상환 또

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 광역본부장등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필요한 관련내용을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호의 사후기술지도의 시행은 투자완료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되, 용자보조규정 제38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사후관리 및 관리해제)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설비를 유지, 관리 및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의 사용, 임의양도, 용자자금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0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후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 지원설비별(바닥공사 제외) 판단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단위 지원설비별 판단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바닥공사 :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4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용자보조규정 제28조의8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후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용자보조규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광역본부장등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관리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관리해제할 수 있다.

제42조(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 용자보조규정 제8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일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및 성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되, 그 밖에 동일 사업자의 판단기준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심사위원회 통합운영) 광역본부장등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와 제18조 및 제19조, 제33조,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수당 등 지급) 광역본부장등은 제7조, 제19조, 제33조,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 또는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열람으로 의결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지출예산집행지침」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당연직위원 및 공단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설비표식) 광역본부장등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 시에 별표 3의 지원설비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제46조(용자금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등) ① 이사장은 용자보조규정 제39조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또는 부가세 대납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공급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시정요구, 별표 4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은 처분이 결정되어 용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공급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한 날 부터 적용한다.

제47조(지원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절사)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모델) 지원가능금액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모델)별 지급가능금액 결정시 용자금의 경우에는 십만원 미만, 보조금의 경우에는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48조(기밀유지)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융자금 부분지원 및 보조금 부분지급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13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서상의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투자완료된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모델)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모델) 단위로 융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설비의 착수금 등을 위하여 보조금의 선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 시기 등은 이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은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허위 및 부정한 투자에 있어 보조금 환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 지급결정 또는 지급받은 자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용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용자보조규정 제7조 관련)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 가. 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 나. 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 다.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 가.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 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나.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 단,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재하중 3톤 미만으로 후방충돌 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한다.
- 다.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 라.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 마.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바.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별표20)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 나.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 다. 법 제89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 라.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 마. 법 제98조 및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 바. 법 제102조 및 규칙 제137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 사. 규칙 제186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

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용자보조규정 제19조, 제27조, 제28조의4 및 제28조의8 관련)

1. 안전설비 개선

- 가.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통로, 작업발판, 추락·붕괴·낙하위험 방지,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 등「작업장 등의 안전」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나.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 다.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 라.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안전조치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마.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
- 바. 위험물질, 화기, 화학·건조설비, 용접장치 등에 의한 「폭발·화재 및 위험물질 누출방지」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 사. 추락 위험장소의 추락예방 조치 및 고소작업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확보된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환경 개선

- 가. 유해물질 제조·사용·취급 등의 장소에 가스·증기·분진 등을 밀폐·배기하기 위한 설비, 작업장바닥 또는 유해물질 사용·취급 대체설비
- 나. 분진작업장소에 분진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밀폐·배기·청소 또는 대체설비
- 다. 밀폐공간, 유해가스발생, 고온·한랭·다습작업, 유해광선, 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설비 또는 환기설비, 세척·세안시설 등 위생시설
- 라. 소음, 진동원 등을 감소·밀폐·흡음·격리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3. 작업공정 개선

- 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제거를 위한 설비
※ 단, 지게차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자동화설비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서 제외('17. 7.1부터 보조결정 제외,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
-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 인력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인간공학적 설비

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설치·해체, 구입·사용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5.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가.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안전보건도서 등 관련자료, 자료게시대, 책장, 상담용 책상, 의자, 컴퓨터
- 나. 안전보건교육시설: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책상, 의자, DVD·CD 등 교육교재, 교육용 컴퓨터

터, 체험교육설비, VR 등 가상체험 설비

- 다.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헬스장, 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수영장 시설, 에어로빅실
- 라. 오염물 세척 등을 위한 공용사용 목욕(샤워)시설 및 세탁시설
- 마.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품목: 혈압계, 그 밖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고취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품목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품목

6.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방호장치
- 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다. 그 밖에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7.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개선

- 가. 유해·위험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보호장구
- 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개인보호구 및 보호장구, 안전·보건표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서 제외(단, '17. 7.1부터 보조결정 제외)
- 다.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제거·격리·밀폐·차단·대체 등의 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설비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 기준

(제28조제3항 관련)

대상품목	사용기간	보조금 환수비율
제4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3년인 지급대상 품목	18개월 미만	100%
	18개월 이상 27개월 미만	50%
	27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0%
제4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5년인 지급대상 품목	30개월 미만	100%
	30개월 이상 45개월 미만	50%
	45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30%

지원설비 표식

(제45조 관련)

□ 장방형 규격: 가로 70mm 내외, 세로 40mm 내외

산업안전보건 **지원설비**

이 설비는 ○○○○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지원설비로서 임의 매각, 대여, 폐기 및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광역시본부(지역본부·지사)장

용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공급업체 등의 제한기준

(제46조 관련)

□ 용자금 지원대상자, 용자금 지원받은 자, 보조금 지급대상자, 보조금 지급받은 자 등 : 규칙 제237조 준용

□ 공급업체 및 그 밖의 관계인

부정당 내용		제한기간
1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최종판결을 받는 경우 ※ 경찰조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잠정중단 하고 최종판결에 따라 사업재개 여부 결정	5년
2	공단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명목·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비용을 요구한 경우	5년
3	공급업체에서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토록 영업활동을 한 경우	3년
4	공급업체간 담합행위를 하여 공단 사업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5	용자금 지원대상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공사) 가격결정 자료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	3년
6	용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중상해 재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년
7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사업장 사업주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3년
8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서류를 허위 또는 과장 발급한 경우	3년
9	용자금 지원대상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 등으로 법 제86조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3년
10	타인의 전문공사등록증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 설비 공사를 한 경우(양자 모두)	2년
11	참여제한 중인 공급업체와 생산 또는 관리 등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2년
12	공급업체 정보, 제품정보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2년
13	특정설비 또는 불필요한 설비의 투자를 강요·권유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년
14	민원제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민원처리결과 당시 민원인 현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	2년
15	투자계획 및 보조금 지급 내용과 상이하게 설비를 시공 또는 납품한 경우	2년
16	교체지원 대상 폐기설비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수거 또는 구입하는 경우	2년
17	자금지원결정 결과, 납품(공사)업체로 선정된 후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품납품 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18	안전조치 기준에 맞지 않은 지원설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19	자사 홍보물에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수록하거나 노동부·공단의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년
20	공급업체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된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공단이 제재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1년
21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경우	6개월
22	특정설비 또는 불필요한 설비의 투자를 강요 또는 권유하여 사업장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6개월

※ 공급업체의 대표자, 임원 및 소속직원이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며, 참여제한(영구 제외)에 해당되는 사안 2회 발생 시 처분기준을 영구 조치

공무원가계산서 조정내역

(단위: 천원)

재정 지원번호		사업 장명		설비명 (품목코드)	(- -)		
구 분			소요금액	판단금액	조정금액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인 건 비	직 접 인 건 비					
		간 접 인 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 비고에는 신청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액이 생기는 경우 사유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용자금 지원 심사위원회 회의록
 보조금 지급

(제7조제5항·제19조, 제33조,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기관명:

심사일시	20 . . . (회차)	심사장소	
심사안건	▶ 지급 대상자: 안전00산업 등 개소 건 • 용 자: 안전00산업 등 개소 건 • 보 조: 안전00산업 등 개소 건 ▶ 기타(취소 등): 개소 건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소요 금액	신청금액			판단 금액	결정금액		
		계	용자	보조		계	용자	보조
계								
용자사업								
보조 사업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단지							
	사망사고 등 <u>고위험개선</u>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심사결과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전체)			
	<input type="checkbox"/> 부분공개 (사유 및 공개내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사유:)			
■ 심사위원 서명 (찬성: ○ , 반대: ×)				
성 명	서 명	찬반여부	심사제외대상	기타의견

- ※ 심사제외대상은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자계획 확인 등 직접 응자·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말함
- ※ 투자계획 확인표 또는 취소, 폐기, 양도 등 관련서류 첨부
- ※ 사업장별 심사결과는 붙임 양식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단위: 천원)

연 번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설비명 (품목코드)	수 량	소요 금액	신청금액			판단 금액	결정금액			사업 구분
					계	융자	보조		계	융자	보조	
		소계										
		소계										
		소계										
		소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0 - 00호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및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 20 . . .)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위촉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등과 병행하여 위촉 가능

용자금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서
 보조금 지급

(제11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신청자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결정내역

(단위: 천원)

설비명	수량	소요금액 (a)	판단금액 (b)	신청자 부담금액 (c)	결정금액 (d)			
					수량	계	용자	보조

- ① 소요금액(a)은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단에 제출한 견적금액임
- ② 판단금액(b)은 각 지원설비의 소요금액에 대한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지원(지급)한도액임
- ③ 결정금액(d)은 판단금액(b)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비율,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최대지원금액, 사업장 지원(지급)한도액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지급) 결정된 금액임
- ④ 신청자 부담금액(c)은 소요금액(a)에서 공단 결정금액(d)을 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임

■ 결 정 일: 20 년 월 일

■ 투자완료(확인요청) 기한: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기한경과 시 지원결정 취소)

■ 용자취급 금융기관: ()

귀하(사)는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보조금 지급
 통보하오니 투자완료 기한내에 투자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사업주 준수사항: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급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 및 부정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전부를 취소하고 환수, 형사 처벌 되오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5조제5항 관련)

1. 우리 공단의 융자금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원신청(사업주→공단) ➡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대출약정(사업주↔은행) ➡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투자확인서」 발급(공단) ➡ 융자금 지원요청(사업주→은행) ➡ 융자금 지원(은행) ➡ 사후기술지도(공단)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도별 융자금 채원 및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우리 공단에 융자금 지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융자금을 지원받기 이전이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양도, 중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융자금 지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융자금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②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융자금 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⑥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⑦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

■ **제조·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초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 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준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6.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7.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⑥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33조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 (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보조금 지급요청 (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시)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업주→공단)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공급업체→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확대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변경할 수가 없으며, 감소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
- ③ 보조금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④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⑤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⑥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⑦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완 요구에 대한 보완 미 실시 또는 해체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설비·공사대금 입금 증빙서류를 공사종료(공단전산 기준)후 2개월 이내에 공단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37조제1항 관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
←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3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공공기관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급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⑥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

(제12조제1항·제24조,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담 당	차 장	부 장

(단위: 천원)

재 정 지원번호		사업장명		결 정 일	20 . . .
변경 전 결정금액(총계)			변경 후 지원(지급)가능금액(총계)		
계	읍자	보조	계	읍자	보조

■ 투자계획변경 내역

설 비 명 (품목코드)	변 경 전				변 경 후							
	모델 및 규격	수 량	결정금액		모델 및 규격	수 량	소요 금액	신청금액		판단금 액	지원(지급) 가능금액	
			읍자	보조				읍자	보조		읍자	보조
계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	--

20 년 월 일

검토자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제4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소재지:

2. 대출예정 현황

- 필요금액:
- 대출가능 금액:
- 보증확인: 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기타(해당사항 ○표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은 당 은행에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부)장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설비투자완료 후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사업장이 설비대금 지급곤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장의 신용도,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출거래 예정이 가능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2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제조·서비스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확인(지급)요청금액		
		계	용자	보조	계	용자	보조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2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3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4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 25조제1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3.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6.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해당 시)
 7.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확인 요청일	20 . . .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 이내 해체 → 해체(사용)완료 10일 전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총계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m ² , 작업발판 2열 ()m ²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m ² , 낙하물방지망 ()m ² , 추락보호망 ()m ²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제13조제1항·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담 당	차 장	부 장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업종 (업종코드)	()	근로자수		명
		공사금액		천원
소재지	()	☎ () -		
완료확인 (설치)요청일	20	투자완료 확인일	20	
완료재확인 (해체)요청일	20	투자완료 재확인일	20	
완료구분	<input type="checkbox"/> 용자사업 <input type="checkbox"/> 보조사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개선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시스템비계 설치 <input type="checkbox"/> 시스템비계 해체 <input type="checkbox"/> 안전방망 <input type="checkbox"/> 사다리형 작업발판)			
확 인 의 견	확인자 (서명)			

■ 투자완료 설비 검토내역

(단위: 천원)

설비명 (품목코드)	모델 및 규격	수량		소요 금액 ①	실투자 금액 ②	결정금액③			확정금액④			사업 구분	검정 사 여 부	
		계획	확인			계	용자	보조	계	용자	보조			
계														

※ 용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명은 대상 설비명을 우선 기재 후 확인 가능한 주요 부품에 대해 규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첨부 : 투자완료된 대상설비를 촬영한 사진 각 1부.

- 【작성방법】** ① 소요금액 : 신청당시 공급업체 견적금액
 ② 실투자금액 : 시설투자 사업주와 공급업체간 실거래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
 ③ 결정금액 :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서에서 사업장에 통보된 금액
 ④ 확정금액 : 투자완료 확인결과에 따른 용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최종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		<input type="checkbox"/>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완료일자	20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 급 결 정 액	착 수 금 신 청 액	채권확보방법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 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불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지급받는자(2)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3)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4)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5)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